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 1. 21.(화) 10:00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상호 존중 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이정범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5년 1월 10일
- 회부일자: 2025년 1월 14일

3. 제안 이유

-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의 문제로 조직 내 갈등과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상호 존중의 가치를 조성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 권한, 권리, 책무 등을 규정하여 갈등을 방지하고, 상호 존중의 날을 지정하여 상호 존중의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구성원의 책무(안 제4조)
- 상호 존중 행위(안 제5조)
- 구성원의 역할(안 제6조)
- 권리 보호(안 제7조)
- 권리 보호에 따른 책무(안 제8조)

- 상호 존중의 날 지정 및 홍보(안 제9조)
- 실태조사 및 교육(안 제10조, 안 제11조)
- 포상 및 지원(안 제12조, 안 제13조)

5. 검토 의견

가. 조례 제안 이유 검토

-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의 문제로 조직 내 갈등 및 여러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상호 존중의 가치를 조성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 권한, 권리, 책무를 규정하고 상호 존중의 날을 지정하여 직장 내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과 건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항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하여 목적 및 정의, 교육감의 책무, 상호 존중 행위, 구성원의 역할, 권리 보호, 권리 보호에 따른 책무, 상호 존중의 날 지정 및 홍보, 실태조사, 교육, 포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본 조례에 해당하는 “구성원”이란 충청북도 내의 교육행정기관 또는 각급 학교 소속이거나 충청북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으로 충청북도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함
-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와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하여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을 정의함
- 안 제5조는 상호 존중 행위 8개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구성원의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구성원의 역할을 정의함

- 안 제7조는 교육감이 구성원의 권리 보호 및 구제 행위를 위한 행위를 할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구성원의 권리 보호를 규정함
- 안 제10조는 실태조사, 안 제11조는 교육실시, 안 제12조는 포상, 안 제13조는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정의함

다.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교육청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 문화를 촉진하여 교육 현장의 협력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배려를 확산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
- 충청북도교육청은 2020.09.29.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고, 이외 11개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시행하여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 및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상호 존중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제정한 1건이 있으며 구민과 공무원 간의 상호 존중을 규정하여 시행 중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를 훈령으로 규정하였음

충청북도교육청 (입안 예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영등포구 ('22. 3. 3. 제정 및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훈령 ('24. 8. 23. 제정 및 시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구성원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상호 존중 행위)	제5조(상호 존중 행위)	제5조(교직원의 책무)
제6조(구성원의 역할)	제6조(상호 존중의 날 지정 등)	제6조(갑질전담책임관의 지정)
제7조(권리 보호)	제7조(지원)	제7조(교육)
제8조(권리 보호에 따른 책무)		제8조(상호 존중 행위)
제9조(상호 존중의 날 지정 및 홍보 등)		제9조(상호 존중의 날 운영 등)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지원)
제11조(교육)		제11조(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
제12조(포상)		
제13조(지원)		

- 우리 사회의 갑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이 주도하여 이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과 함께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을 규정한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됨